

## 7-1. 환매조건부채권 약관

#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이 약관은 환매조건부채권매도(이하 '조건부채권매도'라 한다)업무를 영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매조건부채권(이하 '조건부채권'이라 한다)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(이하 '고객'이라 한다)간에 조건부채권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### 제2조 【조건부채권매도의 내용】

- ① 조건부채권매도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조건부채권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며 필요 시 액면을 분할할 수 있다.
- ③ 분할매도 시 최저 한도액은 50,000원으로 하고 10,000원 단위로 초과할 수 있다.

### 제3조 【조건부채권매도의 성립 등】

- ① 조건부채권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,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②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, 우체국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 제4조 【환매수】

고객은 약정기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 【환매수 가격】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환매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, 10원 단위로(10원 미만 절사) 계산한다.
  - 환매수가격 = 조건부채권매도가격 × (1 + 약정일수/365 × 조건부채권매도이율)
- ② 조건부채권매도 약정기간중에 매도된 채권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(원천징수차액을 차감)은 제1항의 환매수 가격에서 정산한다.

- ③ 제1항의 산식 중 조건부채권매도이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.
- ④ 제1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한다.

### 제6조 【이율의 게시】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건부채권매도 이율표를 고시한 후 우체국에 게시할 수 있다.

### 제7조 【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】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건부채권매도에 있어서 약정기일전후에 환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중도환매수이율은 환매일수일까지의 해당 기간이율을 적용한다.

### 제8조 【매도채권의 보관 등】

-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매도채권을 보관, 관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매수 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된 매매계산서와 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매매계산서는 환매수일이 확정된 경우 교부할 수 있으며, 통장에 환매수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, 그 보관기간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채권이 환매수일 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# 제9조 【매도채권의 종목대체】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환매수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중인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### 제10조 【계좌의 폐쇄】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잔고가 '0'이 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【인감의 신고 등】

- ① 고객은 조건부채권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인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.
- ② 고객은 통장이나 신고인감을 분실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즉시 그 사항을 우체국에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# 제12조 【약관의 변경 등】

- ① 이 약관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약관을 우체국에 비치하고 고객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.

### 제13조 【관계법규의 준용】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체신관서의 국채·공채 매도 증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다.

### 제14조 【양도 등의 제한】

고객은 통장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상속, 유증판결,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